

설문지 번호				
온라인조사 주소	http://gwfri.gwd.go.kr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설문지 탑재				

##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청 소속으로 강원도의 여성·가족·복지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환경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제시해주신 귀하의 의견은 향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에 따라 전적으로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 조사수행기관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담당자: 송민경 연구위원

※ 조사관련 문의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 033-248-6322)

응답 방식은 ① 온라인조사(홈페이지 배너창), ② 전자메일(직접 입력 혹은 스캔 후 발송), ③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메일: <buta79@korea.kr>, 우편: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 본 기관용 조사에는 반드시 **기관장 및 사무국장, 회계 담당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A.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2018년 12월 31일 기준>

(※13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1	시설명	설립연도	년
<p>※ 기관조사는 전수조사(강원도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조사)로 진행됨.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 등이 있더라도, 기관별로 개별 조사해야 함.</p>			
2	운영 주체	① 사회복지법인                      ② 재단법인                      ③ 학교법인 ④ 사단법인                            ⑤ 종교법인                      ⑥ 의료법인 ⑦ 비법인민간단체                  ⑧ 개인운영                      ⑨ 회사법인 ⑩ 국립·지방자치단체              ⑪ 기타	
3	시설 소재지	강원도                      시·군	
4	시설 연락처	전화번호 : (033)                      -	
5	건립 및 운영형태	① 관립-민영                            ② 민립-관영                            ③ 민립-민영 (지자체 설립-민간 운영)          (민간 설립-지자체 운영)          (민간 설립-민간 운영)	
6	이용자 현황	생활시설: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이용시설: 정원 _____명, 2018년 이용자 실인원 수 _____명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정원이 있는 경우 기입하시고, 정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실인원수를 기입해 주세요.)	
7	종사자 현황	종사자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입하지 마세요) ① 상용직 근로자(정규직)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② 상용직 근로자(무기계약직)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③ 임시직 근로자(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직)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④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⑤ 비임금 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① 당해 연도 파견 근로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사회복지요원 등 정부를 비롯한 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유급 근로자) ② 당해 연도 이직 근로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사직서 작성 및 퇴직금 정산을 한 경우는 이직으로 간주함. 단, 법인 내 시설 간 이동은 사직서 및 퇴직금 없음) ③ 당해 연도 채용 근로자 _____명(2018년 12월 기준)	
8	시설 유형	① 노인복지시설                      ② 아동복지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④ 정신보건시설                      ⑤ 노숙인시설                      ⑥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⑦ 지역자활센터                      ⑧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⑨ 성폭력피해보호시설 ⑩ 가정폭력보호시설                  ⑪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⑫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⑬ 청소년복지시설                      ⑭ 기타 (적을 것: _____)	

		생활시설	이용시설	유형		
9	시설 세부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여가복지시설 6. 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		
		8. 아동양육시설 9. 아동일시보호시설 10. 아동보호치료시설 11. 자립지원시설 12. 공동생활가정	13. 아동상담소 14. 아동전용시설 15. 지역아동센터 16. 아동보호전문기관 17. 가정위탁지원센터 18.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19.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구분: _____) 2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22.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구분: _____)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8. 정신요양시설 29.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30.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31. 노숙인자활시설 32. 노숙인재활시설 33. 노숙인요양시설	3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6. 노숙인급식시설 37. 노숙인진료시설 38. 쪽방상담소	노숙인시설		
		39. 결핵·한센시설	40. 사회복지관 41.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42. 일반지원시설 43. 청소년지원시설 44. 외국인지원시설 4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46. 자활지원센터 47.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1.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51번으로 기입 5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53.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54.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5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56. 일시지원복지시설	5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 청소년쉼터 60. 청소년자립지원관 6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6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63. 기타 (적을 것: _____)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시설 세부유형(p.5~6)을 참조하여 기입해 주세요.				

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보수수준

<2018년 12월 기준>

10. 작성 요령을 참고해서, 종사자 개인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3~14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 인사자료/연말정산/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연말시점 재직 중인 상용직/임시직 직원) ※종사자 인원이 많을 시, 별지 사용 가능

연번	생년월		성별	직위직종	자격증	2018년 12월 기준			최종학력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주근로일수	주근로시간	사회보험	2018년 보수총액 (세전) (단위 : 원) A+B+C	2018년 기본급 총액 (단위 : 원) A	2018년 수당 총액 (단위 : 원) B	2018년 성과급 총액 (단위 : 원) C	2019년 예상 보수총액 (세전)
	년	월				현기관	사회복지	인정호봉											
예시	90	12	남	8				10	3	1	1	5	40	1	32,880,000	22,000,000	10,000,000	88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 보수체계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8년 12월 기준>

11. 귀 시설의 총 인건비 지출의 예산 출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합하여 100%가 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총계	정부 보조금			자부담 (법인보조금 포함)	후원금	기타
	중앙	광역	기초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12. 귀 시설의 보수급여표(급여규정)는 다음의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15페이지의 작성요령 참고)

- 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②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 ③ 직능단체 권고안
- ④ 법인 자체기준
- ⑤ 시설 자체기준
- ⑥ 기타 (적을 것: \_\_\_\_\_)

13. 귀 시설의 보수기준표(2018년도)를 참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종사자의 직위/직종별 기본급 체계(임금 테이블)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호봉제 시설만 응답: 15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호봉	관장/원장	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 )	( )	( )	( )	( )	( )	( )
1							
5							
10							
15							
20							
25							
30							

※ 만약 다른 명칭의 직위/직종을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14. 귀 시설은 호봉산정 시에 다음의 경력 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100%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호봉제 시설만 응답: 15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단, 여러 직군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기재)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권고 기준 적용 시 그대로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적용 비율 기재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 경력	군 복무 관련 경력
_____ %	_____ %	_____ %

15. 귀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의 작성요령 참고)

- ① 도 및 시군 지급 복지수당-처우개선 수당(종사자 개별 지급이지만, 귀 시설 종사자가 지급 대상자라면 표시)
- ② 연장근로수당
- ③ 야간근로수당
- ④ 휴일근로수당
- ⑤ 명절휴가비
- ⑥ 가족수당
- ⑦ 연차수당
- ⑧ 주휴수당
- ⑨ 정액급식비(급식수당)
- ⑩ 관리자수당
- ⑪ 정근수당
- ⑫ 장기근로수당
- ⑬ 가계보조수당
- ⑭ 가계안정지원수당
- ⑮ 직무수당
- ⑯ 도지역근무수당
- ⑰ 명절수당(효도수당)
- ⑱ 복지수당
- ⑲ 서무회계수당
- ⑳ 자격수당
- ㉑ 자녀교육 및 보육수당
- ㉒ 교통수당
- ㉓ 기말수당
- ㉔ 직원포상수당
- ㉕ 기타 (적을 것: \_\_\_\_\_)

16. 귀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재원출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원출처별로 각각 해당되는 수당의 번호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16-1.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15번 응답문항에서 선택): \_\_\_\_\_

16-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15번 응답문항에서 선택): \_\_\_\_\_

16-3. 법인 등에서 지급하는 수당(15번 응답문항에서 선택): \_\_\_\_\_

17. 귀 시설이 종사자의 현재 보수수준 및 지급방식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 ②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경력직 직원 채용 어려움
- ③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 승진의 제한
- ④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
- ⑤ 인건비 부족분 충당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족
- ⑥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율 증가
- ⑦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⑧ 기타 (적을 것: \_\_\_\_\_)

18. 귀 시설의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②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격차 최소화
- ③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방식(사업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으로 변경
- ④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 ⑤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⑥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⑦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 ⑧ 시설별 최소 승진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
- ⑨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연월차 수당, 시간 외 수당 등)
- ⑩ 기타 (적을 것: \_\_\_\_\_)

#### D. 근로여건

<조사당시 현재시점>

19. 귀 시설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20. 귀 시설에서는 현재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① 퇴직금(일시금형태)
- ② 퇴직연금 형태
- ③ 지급하지 않음
- ④ 기타 (적을 것: \_\_\_\_\_)



야간근로	①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 지급 ③ 기타 방식 (적을 것: _____)	월 최대 _____ 시간	월 최대 _____ 시간
휴일근로	①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 지급 ③ 기타 방식 (적을 것: _____)	월 최대 _____ 시간	월 최대 _____ 시간

26. 귀 시설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종사자의 연차, 병가, 경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교육·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습니까?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 ① 예 (\_\_\_\_\_ 명) (→26-1번으로 갈 것)                      ② 아니오 (→27번으로 갈 것)

26-1. 귀 시설은 결원이 발생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셨습니까?

- ① 예 (→26-2번으로 갈 것)                      ② 아니오 (→26-5번으로 갈 것)

대체인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력  
 해당 휴가: 연차 유급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교육 및 훈련 등  
 제외 휴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여성)출산휴가와 (여성·남성)육아휴직 제외

26-2.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우)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26-2-1번으로 갈 것)                      ② 아니오 (→26-2-3번으로 갈 것)

26-2-1.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하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V표해 주십시오.

- ① 대체인력(돌봄서비스)                      ② 대체인력(조리원)

26-2-2.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하신 서비스가 귀 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도움이 되지 않음  
 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26-2-3.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강원도 시행 사업만 해당)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도를 몰라서                      ② 해당 지역에 시행되지 않아서  
 ③ 신청했으나 해당 시기에 대체인력이 제공되지 않아서  
 ④ 기타 (적을 것: \_\_\_\_\_)

26-3.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까?

- ①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활용                      ②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③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④ 직능단체 권고안  
 ⑤ 법인 자체기준                      ⑥ 시설 자체기준  
 ⑦ 기타 (적을 것: \_\_\_\_\_)

26-3.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움이 없었음                      ②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지침 부재  
 ③ 인건비 부담(예산부족)으로 고용이 어려웠음                      ④ 고용기간이 짧아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웠음  
 ⑤ 성범죄(범죄) 경력 조회 등 행정 상 절차 때문에 어려웠음  
 ⑥ 기타 (적을 것: \_\_\_\_\_)

26-4.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지침 부재                      ② 인건비 부담(예산부족)  
 ③ 관련업무 경력자를 찾기 어려워서                      ④ 결원기간이 짧아서  
 ⑤ 성범죄(범죄) 경력 조회 등 행정 상 절차가 복잡해서  
 ⑥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어서                      ⑦ 기타 (적을 것: \_\_\_\_\_)



27. 귀하께서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대체인력 파견 지원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연차유급휴가                      ② 배우자 출산휴가                      ③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병가)  
 ④ 경조사 휴가                      ⑤ 종사자 보수교육 등의 교육훈련                      ⑥ 기타 (적을 것:                      )

28.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최소 파견기간(또는 시간)의 단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일제(4시간)                      ② 전일제 1일(8시간)                      ③ 전일제 3일(24시간)                      ④ 전일제 5일(1주일)  
 ⑤ 전일제 10일(2주일)                      ⑥ 1개월 이상                      ⑦ 기타 (적을 것:                      )

### E. 시간선택제 및 교대제 근무

<조사당시 현재시점>

시간선택제 - 근로자가 ① 일·가정 양립, ②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③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시간선택제는 주5일 근무를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방식

29. 귀 시설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였습니까? 도입하지 않은 경우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도입함                                      ② 도입할 예정임                                      ③ 도입 의사 없음  
 (→29-1번으로 갈 것)                      (→29-1번으로 갈 것)                      (→29-3번으로 갈 것)

29-1.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해소와 생산성 증대  
 ②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고용  
 ③ 일·생활 균형                                      ④ 시설평가지표 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⑤ 기타 (적을 것:                                      )

29-2.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도입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무에 적용하셨습니다? 만약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신다면 적합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사회복지직(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등)  
 ② 의료직(간호사, 간호조무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등)  
 ③ 기능직, 시설관리직(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경비원, 기사 등)  
 ④ 상담직(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등)  
 ⑤ 교사직(직업훈련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회재활교사 등)  
 ⑥ 일반직, 사무직  
 ⑦ 기타 (적을 것:                                      )

29-3. (도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정규직 고용 불안  
 ③ 업무 연속성, 직원 몰입도 등의 저하                                      ④ 기타 (적을 것:                                      )

#### 【교대제 근무(생활시설 대상자만 응답하십시오)】

30. 귀 시설은 행정지침 상 교대근무제 명시 시설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31. 귀 시설은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31-1번으로 갈 것)

② 아니오 (→32번으로 갈 것)

**31-1.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 ① 2조 격일제(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 휴무)
- ② 2조 2교대(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
- ③ 3조 2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④ 3조 3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
- ⑤ 4조 2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하고 2조는 휴무)
- ⑥ 4조 3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⑦ 기타 (적을 것: )

**31-2.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은 교대제 근무자들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때때로 부여
- ③ 아니오

**31-3.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휴게,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준수하기 어려움
- ② 정부의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원 수준이 낮음
- ③ 생활지도원 1인이 담당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짐
- ④ 양질의 인력 채용이 어려움
- ⑤ 근무 숙련도 차이에 따른 적정 근무조 편성의 어려움
- ⑥ 기타 (적을 것: )

**32. 귀 시설은 4조 3교대제(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근무형태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34번으로 갈 것)
- ② 불필요 (→34번으로 갈 것)
- ③ 보통 (→32-1번으로 갈 것)
- ④ 필요 (→32-1번으로 갈 것)
- ⑤ 매우 필요 (→32-1번으로 갈 것)
- ⑥ 도입함 (→34번으로 갈 것)

**32-1. (필요한 경우) 4조 3교대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개정
- ② 인건비 지원 확대
- ③ 포괄보조금(인건비, 사업비, 경비를 통합하여 총액지원)으로 지원하여 인력활용의 자율성 부여
- ④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항목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필요
- ⑤ 전문 인력확보 문제 해결
- ⑥ 기타 (적을 것: )

**33. 귀 시설에서 4조 3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과 이를 반영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대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의 직종을 표기하고 인력배치 기준 및 필요 인력을 기입해주세요.)

구분	직종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	직종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	직종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
33-1. 현재 인력배치기준						
33-2. 적정 인력배치기준						
33-3. 적정인력배치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총 종사자 수	직종	필요한 종사자수	직종	필요한 종사자수	직종	필요한 종사자수



임금 100%지급(상한 250만원)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④ 가족돌봄휴직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37. 귀 시설의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인지도		이용여부	
	안다	모른다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① 출산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원금 지급 (월4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월120만원, 2개월 지원)				

38. 귀 시설의 유연근로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유연근로제	시행(도입) 여부		지속(적용) 가능성	
	시행(도입)	미시행(미도입)	가능함	불가능함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로 결정하는 제도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④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어 해설 및 조사표 작성요령

※(2018년 12월 기준) A.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보수수준, C 보수체계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사당시 현재시점) D. 근로여건, E. 시간선택제 및 교대제 근무, F.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 I.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1. 시설명, 설립연도**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함

**2. 운영주체**

- 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성격을 기입함
- 개인운영체란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함
- 회사법인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함
- 비법인민간단체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협동조합이나 노동단체, 동창회, 후원회 등을 말함

**3. 시설소재지**

-조사시점 기준 시설의 소재지 주소를 명확하게 기입하며, 시설의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본관을 기준으로 함

**7. 종사자 현황**

- 정원이 없을 경우 기입하지 않음
- 시설과 근로관계에 있는 종사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기입하며, 현원은 '1)상용직 근로자(정규직), 2)상용직 근로자(무기계약직), 3)임시직 근로자, 4)일용직 근로자, 5)비임금 근로자'의 합과 동일하게 작성함
- 이직 및 채용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9. 시설세부 종류**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시설 세부유형을 기입

### 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보수수준

※조사대상: 2018년 연말시점 재직 중인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및 임시직 직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단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및 기타(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10. 생년월:** 주민등록상 앞 4자리 숫자기록(예: 1990년 12월생: 9012)

**성별:** 남 또는 여 한글로 기입

**직위 및 직종:**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 및 지침에 규정된 시설종사자의 직위 및 직종 기재 (해당사항 없을 시, 가장 유사한 직종을 기입)

※ 기준: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에 따른 공식 직위를 기입하여, 자격이나 직무와 관계없음

<b>직위/ 직종</b>	<b>생활시설</b>				
	1. 시설장(원장)	2. 사무국장, 총무, 실장	3. 과장, 팀장	4. 생활복지사	5. 생활지도원
	6. 사무원	7.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8.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9. 정신보건 전문요원	10. 상담지도원
	11. 간호사	12. 영양사	13. 물리치료사	14. 사회재활교사	15. 직업훈련교사
	16. 임상심리상담원	17. 자립지원전담요원	18. 작업지도원	19. 보육사	20. 촉탁의사
	<b>이용시설</b>				
	21. 관장 (센터장, 소장)	22. 부장, 실장	23. 과장, 팀장	24. 선임사회복지사	25. 사회복지사
	26. 일반직 관장	27. 일반직 사무국장	28. 일반직 1급	29. 일반직 2급	30. 일반직 3급
	31. 일반직 4급	32. 보건의료직 1급	33. 보건의료직 2급	34. 보건의료직 3급	35. 보건의료직 4급

36. 촉탁의사	37. 사무직 1급	38. 사무직 2급	39. 사무직 3급	40. 사무직 4급
41. 관리직 1급	42. 관리직 2급	43. 관리직 3급	44. 관리직 4급 (고용직)	45. 영양사
46. 조리사	47. 취사원	48. 기능교사	49. 보육교사	50. 사서
51. 요양보호사	52. 활동보조원	53. 가정폭력전문상담원	54. 성폭력전문상담원	55. 가족생활지도사
56.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57. 기타 ( )			
* 21~2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보건의료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등 * 사무직: 경리, 회계, 전산담당 등 * 관리직: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기능직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여부 판단(1가지만 선택)**

- |                |                       |                                      |                    |
|----------------|-----------------------|--------------------------------------|--------------------|
| 0) 자격증 없음      | 1) 사회복지사 1급           | 2) 사회복지사 2~3급                        |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
| 4) 의료사회복지사     | 5) 학교사회복지사            | 6) 특수교사                              | 7) 청소년지도사          |
| 8) 직업재활사       | 9) 간호사                | 10) 간호조무사                            | 11) 물리치료사          |
| 12) 요양보호사 1~2급 | 13) 정신보건간호사           | 1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5) 의사             |
| 16) 영양사        | 17) 치료사(심리, 언어, 작업 등) | 18) 보육교사                             | 19) 상담원(가정폭력, 성폭력) |
| 20) 통번역사       | 21) 언어재활사             | 22) 시설관리관련자격(방화관리자, 조리사, 전기, 운전기사 등) |                    |
| 23) 기타 ( )     |                       |                                      |                    |

**근속년월:** 현 시설의 재직기간을 기입(현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함)(12월 31일 기준)  
(예: 3년 2개월: 0302)

**사회복지 경력:**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유사경력을 100%로 산정하여 총 종사기간을 년 월로 작성  
(예: 3년 2개월: 0302)

**호봉:** 2018년 12월 기준의 호봉을 작성하되, 시설별로 다른 호봉체계를 무시하고 현 시설의 호봉체계에 따른 호봉 수를 기입

**최종학력:** 1) 고졸미만 2) 고등학교 졸 3)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4) 4년제 대학 졸 5) 대학원 졸 이상

**종사상 지위:** 1)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과  
기타(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종사자에서 제외함  
\* 시설에서 고용한 상용직, 임시직만 기입

**근로형태:** 1) 정규직(기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보장,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  
2) 비정규직(한시적근로: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3) 비정규직(시간제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4) 비정규직(비전형근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재택근무자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회복지부요원 등의 파견직은 종사자에서 제외함  
(시설에서 고용한 상용직, 임시직만 기입)

**주 근로시간:**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휴계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사회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2) 일부 미가입 3) 모두 미가입

**※이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자료를 그대로 기입**

**연말정산 년 보수총액(A+B+C):** 연말정산(2018년) 기준 보수총액(세전) = 연간기본급 총액 + 연간 수당 총액 + 연간 성과급 부가급액 - 근무한 개월에 해당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입 (연말정산액 그대로 기입)

**년 기본급 총액(A):** 년 기본급 총액 기재(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각 월의 기본급 합산)

**년 수당총액(B):**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자격수당, 연월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수당, 법인수당 등 모든 수당 기재

**년 성과급 총액(C):** 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임금(경영실적에 따른 사후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 Ⅲ. 보수체계

11. **인건비 출처:** 2018년 지출부문 인건비 총액을 예산출처에 따라 정부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사업수입)로 나누어 구성비 합산 100%로 기입  
- 지방자치단체 외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도 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 펀드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후원금에 포함
12. **보수기준표 기준 여부**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표가 기관 자체기준이라도 이 기준표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할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표시하고, 지자체 가이드라인과 동일할 경우 지자체 자체기준에 표시함.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표시함  
- 시설의 보수기준표가 타 단체의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입하고, 기준으로만 삼고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인 또는 시설기준에 해당  
- 직능단체 권고안이란 노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아동복지시설협회 등의 각종 직능단체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말함
13. **임금테이블 기입(※호봉제 시설만 응답)**  
- 임금테이블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임금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기입  
- 시설에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테이블을 직위/직종별, 호봉별 차이를 주의하여 기입
14. **호봉산정시 경력 반영 여부(※호봉제 시설만 응답)**  
-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경력, 군 의무복무경력에 대한 최대 호봉 반영 기입(반영하지 않으면 0으로 기입)
15. **수당의 종류**  
- 수당의 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수당 기입  
- 제시되지 않는 수당에 관련해서는 기타사항에 명목 기입

#### <용어의 정의>

- 보수: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